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8. 12. 7.(금), 15:30

2. 장 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7	우정원*, 이주희, 신하운, 정연화, 차안나, 이정화, 장남수**	김희선(간사)
불참인원	5	임원정, 유제욱, 문지영, 김영주, 안홍식	

\*의장 \*\*부의장

4. 안 건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안의 일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임원정, 유제욱, 문지영, 김영주, 안홍식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확인하고,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나. 간사는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 내용을 보고하고 의장은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6. 안건심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 (1) 의장은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안건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간사는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2) 학칙 개정안 중 제48조5(학사학위취득 유예)와 관련하여 장남수 평의원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사항인지 문의하고, 간사는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결재를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이어 신하운 평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 체류 비자와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간사는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답변하겠다고 답하다.

- (3) 의장은 제48조의5(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설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학칙 개정안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4) 학칙 제39조제3항에 대하여 의장은 본교 성적등급이 A+부터 있으므로 '성적등급에 따라 A~D-, S 및 P는 급제로 하고' 문구를 '성적등급에 따라 A+~D-,…………' 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간사는 A+로 수정하겠다고 답하다.
- (5) 학칙 제50조 영문학위증서 서식 추가와 관련하여 장남수 평의원은 서식 제2호가 최종 서식인지 묻고, 서식의 디자인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서체 및 대소문자가 혼용되어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외국 대학의 근사한 학위기 사례를 참고하여 서식 재검토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다.
- (6) 의장은 영문학위기 수여에 대한 학칙 개정안은 승인하되, 서식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평의원들은 이에 동의하다.
- (7) 간사는 학칙 개정안 질의에 대해 교무처에서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은 이를 승인하여 학적부처장에게 답하도록 하다.  
(교무처 참석자: 학적부처장)
- (8) 학적부처장은 영문학위기 서식은 국문학위기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 국내 및 외국 대학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문학위기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만든 것으로 국내 타 대학과는 유사한 형태임을 설명하다. 이어 학적부처장은 지정한 대소문자 혼용 및 서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영문학위기를 제작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9) 학적부처장은 비자에 따라 국내 체류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교 국제처와 타 대학 상황을 확인하였음을 답하다.
- (10) 의장은 영문학위기 서식의 재검토 및 보완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다시 구하고, 평의원들이 동의하여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다.

## 나. 논의사항

###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안의 일

- (1)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및 본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설명하고, 차안나 평의원의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 ①구성원별 의원 동수 구성(학부 학생 평의원 1명 증원), ②참관인 허용인지 확인하다. 이어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기능 강화와 관련한

요구안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2) 차안나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 및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요구안을 작성하였음을 밝히다.
- (3) 의장은 본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심의 및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이를 논의하기보다는 평의원의 수 및 참관인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건을 정하다.
- (4) 이주희 평의원은 학생 구성단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평의원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하고, 차안나 평의원은 학생 대표의 입장에서 학부 학생 평의원의 증원을 요청한 것이며 다른 구성단위에서도 증원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하다. 이어 이주희 평의원은 늘리는 인원 규모에 대해 묻고 차안나 평의원은 구체적인 숫자 제시보다 함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답하고, 타 학교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타 학교 벤치마킹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원을 논의한 것은 아니나 현재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적어도 학부 학생 평의원 1명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 (5) 의장은 인원 변경은 각 구성단위별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고 구성단위별 비율의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님을 설명하다.
- (6) 차안나 평의원은 오랜기간 제시되어 온 사안으로 결정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고, 지속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며 다른 평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7) 이정화 평의원은 현재 구성이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장남수 평의원은 타 대학의 경우 모든 캠퍼스를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학생 평의원 수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하다.
- (8) 이주희 평의원은 전체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를 일부 증가시켜 보다 많은 인원으로 풍부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구성 비율이 반드시 동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비율은 유지하되 인원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다. 신하윤 평의원도 전체적인 비율 조정안에 동의를 표하다.
- (9) 정연화 평의원은 2017년 12월 14일 개정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학생 평의원 수가 1명 증원되었음을 설명하고, 일부 단위의 인원 증가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른 단위도 인원 증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10) 차안나 평의원은 학부와 대학원은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상호 의사소통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별개로 구성단위로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다.
- (11) 의장은 학생 평의원만 1명 증가하는 것은 평의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임을 확인하고 구성단위별 전체 숫자를 늘리면서 비율을 고려해보는 안을 제안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다.

- (12) 참관인 요청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논의 사안에 따라 참관 사유 및 참관 인원을 사전에 의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는 안을 제안하고, 이정화 평의원은 이에 대해 찬성하다.
- (13) 차안나 평의원은 참관에 제한을 두지 않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방식을 설명하고, 참관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이에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회의 운영이므로 중앙운영위원회와 다를 수 있으며, 모든 구성단위에서 제한 없는 참관을 할 경우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다.
- (14) 차안나 평의원은 작년 대학평의원회에서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참관 허용 선례에 대하여 작년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타 협의체에서 진행된 참관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 운영에 저해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다.
- (15) 이주희 평의원은 참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으나, 대학평의원회는 학생회와는 다른 회의이므로 기술적인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회의 참관의 의미는 회의 발언권은 없이 참관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16) 신하윤 평의원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 및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17) 정연화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각 구성단위에서 위임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평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이므로 각 구성단위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18) 이정화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는 중요한 안건이 많고 회의 성격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도 있으므로 안건에 따라 참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참관인의 수 조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다.
- (19) 장남수 평의원은 고등교육법상 참관인에 대한 규정이 없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사안과 대학평의원회 논의사안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참관인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 (20) 이주희 평의원은 비밀유지의 의무는 참관인도 지켜야하며 회의록이 공개되므로 참관인 허용도 긍정적으로 보나, 회의 운영을 위해 참관인 수, 목적 등을 밝히고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관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21) 의장은 참관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신청을 하여 의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으로 평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다.
- (22) 차안나 평의원은 의견 상정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신 평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학생과 밀접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회의가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참관 요청은 타 구성단위의 참관을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참관인 허용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요청하다.
- (23) 이주희 평의원은 모든 구성단위가 참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장은 이를 수용하여 정하다.

(24) 장남수 평의원은 참관에 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추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하고 의장은 회의록에만 남기는 것으로 정하고 논의를 종료하다.

다. 기타

(1) 의장은 규정상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하나, 회의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다.

##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차기 회의 개최를 확인한 후 폐회 선언하다.

2018년 12월 14일

의 장 우 정 원

